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45

발의연월일: 2020. 6. 29.

발 의 자: 한정애·박홍근·강선우

김성주 • 윤관석 • 아수진비

전혜숙 · 김경만 · 이탄희

이원택 · 김주영 · 허종식

이용우 • 박성준 • 황운하

맹성규 · 김회재 의원

(179]

제안이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원직복직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하고 있음. 이에 근로계약기간 종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인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금액 및 부과기간을 상향조정함.

주요내용

- 가. 원직복직이 불가한 경우의 부당해고 금전보상제를 적용함.
 - 1) 부당해고된 근로자는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3항 신설).
 - 2) 원직복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 사유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나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전보상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8조제4항 신설).
 - 3)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근로자의 신청취지 변경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신설).
 - 4)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시, 근로자의 신청취지에 따라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명하도록 규정함(안 제30조제3항).
- 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최대한도는 3천만원으로 높이고, 부과기간은 4년으로 연장함(안 제33조제1항 및 제5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해고에 대한 구제신청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원직복직(原職復職)
- 2.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 액 이상의 금전보상
-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원직복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사업장의 폐업 등의 사유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나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보상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④ 노동위원회는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원직복직을 신청한 근로 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의 사유로 원직복직 이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 항에 따라 신청취지를 변경할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제3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제28조제3항의 신청취지(제28조제4항에 따라 근 로자가 신청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신청취지를 말한다)에 따라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명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2년"을 "4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및 제5항 후단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부당해고등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구
		제신청(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취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원직복직(原職復職)
		2.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
<u> <신 설></u>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원직복
		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근로계
		약기간 만료, 정년, 사업장의
		폐업 등의 사유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나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제
		2호에 따른 금전보상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조사 등) ①	~ ③ (생	제29조(조사 등) ① ~ ③ (현행
략)		과 같음)
<u> <신 설></u>		④ 노동위원회는 제28조제3항
		제1호에 따라 원직복직을 신청

④ (생략)

제30조(구제명령 등) ①·② (생략)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 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 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 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의 사유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청취지를 변경할 것인지확인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0조(구제명령 등)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 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제2 8조제3항의 신청취지(제28조제 4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신청취지를 말한다)에 따라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명하여야 한다.

제33조(이행강제금)	①

에게 <u>2천만원</u> 이하의 이행강제 금을 부과한다.

- ② ~ ④ (생 략)
-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 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 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 수하지 못한다.
- ⑥ ~ ⑧ (생 략)

<u>3전 반원</u>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4년</u>
⑥ ~ ⑧ (현행과 같음)